

8.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5-377號 1995. 12. 8

1. 개정이유

일부 공공법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, 수도권내에서 산업정책상 필요한 공장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,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“문화시설”, “의료시설”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함.
- 나.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공법인의 업무시설에 “국제협력”·“중소기업지원”업무를 하는 공공법인의 시설을 추가함.
- 다.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으로 지

정할 수 있는 범위에 “산업정책상 필요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”을 추가함.

- 라. 1994년 4월 30일 이 영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된 지역안에서 동권역에 편입되기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 택지조성사업에서 자연보전권역내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허용함.
- 마.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보고하던 것을 1회로 조정하되,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강화군·옹진군·서구 검단동과 종전 남양주군(자연보전권역 제외)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하고, 종전 미금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함.

3. 의견제출

이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

는 개인은 199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세워서 작성)를 건설교통부장관(참조:수도권계획과장, 전화번호:504-91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